사례중심의 공정거래법 해설
- 부당한 공동행위 (I) -

이 병 주
공정위 총괄정책과장

1.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1]이라 불리우는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경쟁제한행위 중 그 경쟁저해성이 가장 명백한 행위이다.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도 이들이 서로 담합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상호경쟁없이 시장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마치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시장기능을 인위적으로 마비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경쟁압력이 없어짐에 따라 기업의 창의력 발휘, 신기술개발,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가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하고 진입을 막는 등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고 경제 전체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각국은 독점금지법 등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도 제1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장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사업자간 합의하여 ②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된다(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카르텔(Cartel)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문서'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가루다"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르텔 : Cartel』은 독일어의 카르텔(Kartel)로부터 온 것이다. 그 의미는 중세에 있어서는 교전국간의 문서에 의한 휴전협정을 지칭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Business 용어로서 기업간 경쟁에 있어서의 휴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 사업자간 합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독립된 복수의 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본다.

1) 합의의 주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이다. 사업자단체를 주체로 하는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제된다.

2) 합의의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의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의사의 표현에 의한 합의이든 암묵의 소극적인 의사의 표현이나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르는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이건 그 방법을 불문한다.

3) 합의의 입증

경쟁자간의 합의는 계약서·협정서·결의서 등의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암묵적 합의나 명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합의의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보면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강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합의를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합의는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제반 정황증거에 의한 추정입증이 불가피하다.

4) 합의의 추정제도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6년부터 공동행위 추정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에서는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합의의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간 외형적 행위가 일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 행위의 일치와 부당한 경쟁제한의 입증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증거나 추가적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합의가 있었음이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한편, 외형적으로 행위의 일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개별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임을 입증하

게 되면 공동행위의 추정을 면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5) 외형적 행위의 일치

합의의 성립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의 행위가 외관상 일치함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행위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카르텔협정의 준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의 행위가 완전히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진 경우에도 행위의 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를 행위의 일치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객관적으로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6) 의식적 동조행위

합의의 추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의식적 동조행위(conscious parallelism)이다. 의식적 동조행위란 사업자간 직접적인 의사교환에 의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의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적 동조행위는 경쟁업자간 행위의 일치와 경쟁제한에 대한 공동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1~2개 선도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또는 가격인상 사실을 유도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가격을 유사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면 외형적으로 행위가 일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을 빙자한 암묵적 합의로 인한 반경쟁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위반이 되는 암묵적 합의와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행위를 감안하여 내린 독자적인 의사결정은 구별해야 한다. 결국 외형적 일치이외에 합의를 추정해 낼 수 있는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고 동 행위에 의한 경쟁제한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7) 합의추정을 위한 추가적 요소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추가적 요소는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2] 둘째,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3]

---

2) 해당사업자간 가격인상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비밀회합을 하고 그 접촉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사업자간 가격이나 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하는 경우, 특정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인상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을 단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원가 상승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셋째, 당해 사업자들이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4] 넷째,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이다.[5]

사업자간의 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추가적 요소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당해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추가적 요소를 감안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를 추정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제한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行 爲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간에 모의, 합의의 성립, 참가사업자의 실행행위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법집행상 합의만하고 그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행위가 성립되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92년말 법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의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됨을 명시하여 이와 같은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96년말 법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의만 있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보완함으로써 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모두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6]

3.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과 유사한 조항은 셔먼법 제1조이다.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기타 형태에 의한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제3조에서 "사업자는 … 부당한 거래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한 거래제한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기타 어떤 명의를 가지고 하던지간에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 유지, 인상하거나 또는 수량, 기술, 제품, 설비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상호 그 사업활동을 구속 또는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4) 가격변동의 경제적 요인이 해당 사업자 전원에게 공통되지 않는 경우, 원재료 수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율,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원가구조가 다른데도 장기간에 걸쳐 가격변동의 패턴이 같은 경우 등이다.

5)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들에 대해 동일한 가격책정을 요구할 수 없는 공급자 우위시장인 경우, 거래의 빈도가 낮으며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동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적은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해당된다.

6) '92년말 법 개정시 제19조를 "사업자가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사업자가 …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였다. '96년말 법개정시 제22조를 " … 당해 위반행위의 실행이 있은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에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미국이나 일본도 사업자간의 합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이다. 경쟁자들간의 합의는 명시적 약정에 의해 입증될 수 있지만, 위법행위는 은밀히 계획·수립되므로 명시적 합의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합의는 거의 언제나 담합피의자들의 행위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추론에 의해 입증된다. 이와 관련 의식적 동조행위에 대한 법적용 경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단순한 동조적 행위 이외에 합의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고 동조행위에 의한 경쟁제한효과가 입증되는 경우 위법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요소로는 공동행위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참가기업 각각의 개별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각 기업의 고위경영자간의 의사소통, 생산품의 인위적 규격화, 공동행위의 소산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시장상황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카르텔의 입증에 민법상의 계약성립과 같은 의사의 합치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의 제공(사업자간의 회합 등)이 있고, 그후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사례로 본 부당한 공동행위

가. 명시적 합의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 태성산업사 및 대풍산업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

전북 이리지역 두부제조업체인 태성산업사와 대풍산업사가 두부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이들 업체는 신고인을 포함한 9인의 도매업자와 두부의 판당 공급가격을 1,6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서로 액면 금액 1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후 교부하고, 약속어음 미공증 판매업자에게는 두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동 약정을 즉시 파기할 것을 명하였다.

나. 추정조항 적용사례

1)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10개 유가공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주) 등 10개 유가공업체가 원유가격이 평균 13% 인상됨에 따라 1989.4.1부터 백색시유 3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을 위하여 행한 명시적 계약이나 협정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간에 가격인상을 위한 의사의 연락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였다.

① 우선, 이들 업체의 경영수지 상황이 상이하고, 특히 백색시유 200㎖ 카톤팩의 경우 이들 업체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7개사는 그 제조원가가 최고 10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제품별 가격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② 원유가격의 인상내용은 1989.3.15 공식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 중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7개사는 1989.3.28.부터 3.30.

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5-1호, 1995. 2. 6.
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9-34호, 1989. 6. 7.

까지의 3일간에 가격인상을 위한 내부기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③ 경쟁관계에 있는 10개의 업체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가격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 동 업체간의 사전협의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들 업체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림자동차공업(주) 및 효성기계공업(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

대림자동차공업(주)와 효성기계공업(주)가 자기가 생산하는 모터싸이클제품에 대한 기종·모델별 가격을 인상하면서 125cc모델 및 50cc 스쿠터모델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두 회사간에 문서에 의한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사전의 의사연락을 바탕으로 가격인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그 의사합치에 의하여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① 우선,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두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한 사실이 있었다는 관계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는 바, 동 직원들은 제품에 관한 가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각 회사별 가격인상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실무자들이므로 그 정보가 가격인상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었거나 또한 내부계통을 통하여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예측되며, 이로 미루어 두 회사간에 사전에 가격인상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② 두 회사는 국내 모터싸이클 시장을 복점하고 있고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조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수년간에 걸쳐서도 가격인상을 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경쟁기종인 125cc모델의 가격을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온 사실이 있고, ③ 한편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인상계획을 확정하고도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유보하고 있다가, 그 기간중에 두 회사의 가격관리업무담당부서 실무자들간에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가 상호교환되었으며, 그 후에 효성기계공업(주)가 당초 인상하기로 한 가격을 인하조정하여 시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인상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자들간에 교환된 가격인상에 관한 정보는 두 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수준 및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데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동으로 가격인상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5개 철근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0]

동국제강 등 5개 철근제조업체가 철근판매가격 및 대금지급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이들 업체는 고철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어음할인금리 상승요인 등의 이유로 동국제강이 철근가격을 먼저 톤당 2,800원씩 인상하고 철근대금의 결제조건을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하자 나머지 업체들도 9일 이내에 동국제강과 같은 내용으로 철근가격을 인상하고 철근대금의 결제조건을 조정하였다.

본건의 경우 이들 업체들은 한결같이 합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철근이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철근가격 및 대금결제조건을 변경하였으나, ① 철근

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2-23호, 1992. 3. 9.
1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5-100호, 1995. 6. 5.

의 품질, 규격이 거의 같은 점, ② 1994년말까지 정부의 행정지도로 동일가격이 형성되어 왔던 점, ③ 건설업체는 복수의 철근제조업체와 거래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측에서 동일한 가격, 결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철근의 가격 및 대금의 결제조건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 및 대금결제조건 변경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그 시행일의 시차가 업체들간에 9일 이내인 점 등 외형적으로 행위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과 ① 피심인의 영업부장들이 거래처에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 사실, ② 선도업체인 동국제강과 동조적 인상업체인 삼표상사, 한보철강공업의 내부품의서에는 대금결제조건내용이 없는데도, 동국제강에서 대금결제조건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문을 발송하자 2개 업체도 동조적으로 대금결제조건내용을 추가하여 발송한 사실, ③ 동 업체의 영업부장 5명이 건설회사 자재직협의회 철근분과위원장 소속사인 LG건설을 집단적으로 방문하여 당초의 요구안대로 시행하겠음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수요자인 건설업체가 복수의 철근 제조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공급자에 대해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같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건설업체의 세력이 철근업체들이 세력보다 크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결제조건에서는 수요자측의 요청에 반하는 결제조건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

트 만 상 식

의식적 동조행위 意識的 同調行爲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寡占市場)에서는 한 기업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의사결정이 타경쟁기업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과점기업들은 경험적으로 이러한 과점기업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인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경쟁기업의 행동을 의식하여 동조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음. 즉, 과점기업들은 그 같은 동조적 행동에서 벗어날 경우 경쟁기업의 보복적(報復的) 가격인하(價格引下)등으로 인한 이윤 또는 시장점유율의 감소를 우려하여 서로 암묵적인 양해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됨. 이같은 의식적 동조행위 또는 암묵(暗默)의 양해(諒解)는 실질적으로 기업결합이나 카르텔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학문적으로 또는 경쟁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음. 이는, 동질적 상품의 과점기업들간에 있어 가격의 동일성은 과점기업들이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비록 반경쟁적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경영판단만으로는 그 같은 동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 동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항인 「사업자간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식적 동조행위에 의한 가격인상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